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부발의】  
검토보고서



2023. 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2023. 3. 15.
기획행정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총무과)
- 제출일자: 2023. 3. 3.(금)
- 회부일자: 2023. 3. 3.(금)
- 검토기간: 2023. 3. 3.(금) ~ 3. 9.(목)

### 2. 개정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022. 4. 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의 증대와 주민투표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외국인 주민투표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4항, 제3조)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기존 조례 제3조)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제1항, 제8조)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7조1항, 제9조제1항)
-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안 제7조제2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1조~제12조)
- 주민투표 관련 서식 추가(안 제15조 및 별지 제1~7호서식)
- 부칙 개정

## 4. 참고사항(관련법령 등)

- 관련법령 및 현행조례
  - 「주민투표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6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행정규제 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입법예고(2023. 1. 25. ~ 2. 14.) 결과: 의견 없음
- 조례 · 규칙심의회 결과(2023. 2. 28.): 원안가결

##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서명제도 등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개정(2022. 4. 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3조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규정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전부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개정법 제7조) 기존 조례 제3조(주민투표의 대상)의 규정을 삭제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방식을 종전에는 서면에 의한 서명으로 한정하였으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

하고, 주민투표를 통·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7명 이상을 위원으로 하는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중복 규정을 삭제함.
- 안 제15조는 주민투표청구서 등 관련 서식을 추가하였고, 부칙에서는 전자 청구인서명부 관련 규정이 2023년 4월 27일 시행에 따라 안 제9조제1항의 시행일을 별도로 명시하였습니다.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연계성,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의 전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관 계 법령 】

### □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2022. 4. 26.>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2. 12.>

[2009. 2. 12. 법률 제9468호에 의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가. 예산 편성 · 의결 및 집행
  - 나. 회계 · 계약 및 재산관리
- 3의2.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 ·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 · 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

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③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신설 2022. 4. 26.>

1.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⑥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4. 26.>

[시행일: 2023. 4. 27.] 제10조제1항 후단, 제10조제2항 후단, 제10조제4항, 제10조제5항, 제10조제6항, 제10조제7항, 제10조제8항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16. 5. 29.>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④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방법 및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4. 26.>

[시행일: 2023. 4. 27.]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9항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26.]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 【 현행 조례 】

###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체류지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1.)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사항

제4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한다.

제5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 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 인정되는 사람

⑤ 심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심의·의결 안건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제12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 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부서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